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9. 14.  
제243회 임시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05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2005. 6. 14 : 제2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5. 9. 7 : 제2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오송역세권개발사업 등 도 핵심사업의 추진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충북개발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도가 전액 출자하는 간접운영방식에 의한 지방공사(안 제4조)
-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자본금은 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이외의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로 충청북도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중 도지사가 임명 (안 제11조)
-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 함 (안 제12조)
-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 감사로 겸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되, 임 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정함 (안 제15조)
-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안 제17조)
-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 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9조)

- 공사는 주택 및 일반건축물, 토지개발, 임대 관리사업 등 지방 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총액은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순 자산액의 10배이내, 기타 사업은 4배이내로 한정함 (안 제34조)
-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40조)
-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제43조)

### 3. 검토보고 요지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상만)

##### 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에 대한 검토

- 지방공사는 자치단체가 전액출자하여 간접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 조례안의 내용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sup>1)</sup>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 제49조(설립)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청북도가 공사를 설립하여 택지개발·주택공급·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공복리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음.
- 이는 지방공기업이 추구하는 공익성과 기업성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개발공사는 이와같은 설립취지와 함께 지방화시대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이미 13개 시·도(표-1 참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음.

#### 나. 설립타당성에 대한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서는 지방공사의 경영원칙을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기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지방공사의 운영이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설립의 타당성은 설립목적과 함께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공무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공사설립 타당성 용역<sup>2)</sup>을 의뢰하였으며 용역 결과와 심의 위원회의 찬성의견 등으로 보아 충북개발공사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용역기간이 '05.4.29-6.17일까지로 심층분석하기에는 부족함.

- 그러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개략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설립 배경, 법률적 타당성 검토, 시도 지방공사 경영실태, 재원조달 계획, 오송역세권개발사업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2개사업)에 대한 사업성분석, 조직 및 인력으로 연구내용이 모두 법적요건 등 일반적 사항으로 열거됨으로써 경영이나 사업성 분석이 미흡하며 사업 수지분석은 오송역세권과 밀레니엄타운 2개사업으로 이를 근거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하겠으며,
-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결산대상 12개공사중 인천개발공사에서 경상손실이 발생(표 1 참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경상수지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sup>3)</sup>하는 등 최근들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sup>4)</sup>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체로 포화상태에 있어 사업확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47조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설립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 도의원을 배제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 지방공사의 설립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서 지역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립하도록 권

3) 2002년도 당기순이익 1,562억원 - 2003년도 당기순이익 1,199억원 = △363억원 감소  
(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공기업결산자료)

4) 개발공사 사업추진현황 : 택지개발 9,761천㎡(19개지구), 공단조성 8,066천㎡(7개지구), 주택건설 47,865세대(38개지구), 주택관리 102,270세대(161개지구), 기타 2,560천㎡(21개지구) (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공기업결산자료)

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의 설립은 막대한 도의 재정 투입 즉, 도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표-1) 시·도개발공사 운영현황

(단위 : 명, 억원)

단체별	설립일	전담직원	설립 자본금	총자산	당기순이익 (2003년)	비고
서울	89.02.01	575	11,473	27,633	343	
부산	91.01.25	143	3,558	9,020	135	
대구	88.08.17	119	746	7,131	214	
인천	03.05.24	74	1,380	1,627	△31	
광주	93.09.01	283	980	3,811	8	
대전	93.02.24	816	1,512	2,813	24	
울산	설립준비중					
경기	97.12.01	94	2,366	7,531	187	
강원	96.12.24	47	193	2,235	24	
충북	설립준비중					
충남	없음					
전북	99.01.01	40	846	1,080	73	
전남	04.06.01	7	50	-	-	
경북	97.07.01	34	639	1,081	65	
경남	97.01.01	124	540	2,211	66	
제주	95.03.09	161	294	766	92	

## 다. 자본금에 대한 검토

-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서 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6조는 정관에 자본금을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설립자본금은 출자계획안에 의하면 현금 203억 5천만원과 현물 339억 5천만원을 합하여 총 543억원으로 하고 있음. 이는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제329조제1항과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이어야 한다는 상법제289조제2항에 따라 설립자본금은 543억원으로 하고 수권자본금은 이의 4배정도에 해당하는 2천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판단됨.<sup>5)</sup>
- 그러나 상법에서 정한 자본금 5천만원은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공사입찰시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요건이며, 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주택사업 등은 대부분 대규모사업이며 투입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설립자본금의 적정규모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라. 비밀누설금지 등에 관한 검토

- 조례안 제20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는 공사의 전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의 자문역할을 하는 조례안 제22조 제2항의 기술위원회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최근 모공사(某公社)에서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배우자로 하여금 자산공사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응찰토록하여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로 볼 때 충북개발공사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 시군과의 공동출자에 대한 검토

- 도에서 개발공사를 설립·운영하려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개발공사 설립이 예상됨. 설립타당성에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최근들어 개발공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세가 열악한 우리도의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개발공사를 설립할 경우 제한된 사업을 나누어 먹기 식이되어 경영이 다같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주도의 경우<sup>6)</sup>처럼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하여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

6) 제주도개발공사 출자현황 : 제주도 268.7억원, 제주시 2.9억원, 서귀포시 6.1억원, 북제주군 5.72억원, 남제주군 10.28억원(자료 : 제주도개발공사)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가. 수정 이유

-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사업계획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 아울러 조례안 체계나 문구사용에 있어 불합리적이거나 의미 전달이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를 2개조문으로 분리
  - 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며, 조의 제목은 (출자)로 함.
  - 안 제5조내지 제49조를 제6조내지 제50조로 함.
  - 안 제5조제4항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함.
- 안 제20조의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0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 ①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 안 제46조제1항중 “그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함.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가. 제239회 임시회시 심사보류 사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에 의한 심사위원회 구성요건 미비
- 개발공사 설립여부는 최종 용역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하여야 하나 중간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것은 절차 미이행
- 용역보고서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오송분기역 역세권 사업 등의 개발공사가 계획하는 사업의 사업성 분석이 전반적으로 미미한 점 등 용역보고서 보완

### 나. 심사보류 내용 보완조치내역

- 도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충북개발공사설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충북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최종) 보완 제출 등

##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9. 7.

제안자 : 김홍운의원 외

## □ 수정 이유

-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사업계획 수립 등의 자문에 응하는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규정을 신설하며,
- 아울러 조례안 체계나 문구사용에 있어 불합리적이거나 의미전달이 애매모호한 불명확한 조문 등은 보다 합리적이며 현실에 맞는 문구 등으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수정하고자 함.

## □ 수정 주요내용

- 공사의 자본금과 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4조를 2개조문으로 분리
  - 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며, 조의 제목은 (출자)로 함.
  - 안 제5조내지 제49조를 제6조내지 제50조로 함.
  - 안 제5조제4항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함.
- 안 제20조의 비밀누설 금지 대상에 기술위원회 위원을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한 재산취득에 제한을 두도록 함
  -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0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 ①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 안 제46조제1항중 "그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함.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항을 제5조로 하며, 조의 제목은 (출자)로 한다.

안 제5조내지 제49조를 제6조내지 제50조로 한다.

안 제5조제4항중 “5,000원”을 “10,000원”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4,000만주”를 “2,000만주”로 한다.

안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 ①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안 제46조제1항중 “그 소속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4조(자본금)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p> <p>(신설)</p> <p>제5조(주식의 발행)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만주로 한다.</p> <p>제6조(생략)                      제7조(생략)                      제8조(생략)                      제9조(생략)</p>	<p>제4조(자본금)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삭제)</p> <p>제5조(출자) <u>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u></p> <p>제6조(주식의 발행) ① (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제정안과 같음)                      ④-----                      10,000원----                      ⑤-----                      2,000만주---</p> <p>제7조(제정안과 같음)                      제8조(제정안과 같음)                      제9조(제정안과 같음)                      제10조(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10조(생략)</u>  <u>제11조(생략)</u>  <u>제12조(생략)</u>  <u>제13조(생략)</u>  <u>제14조(생략)</u>  <u>제15조(생략)</u>  <u>제16조(생략)</u>  <u>제17조(생략)</u>  <u>제18조(생략)</u>  <u>제19조(생략)</u></p>	<p><u>제11조(제정안과 같음)</u>  <u>제12조(제정안과 같음)</u>  <u>제13조(제정안과 같음)</u>  <u>제14조(제정안과 같음)</u>  <u>제15조(제정안과 같음)</u>  <u>제16조(제정안과 같음)</u>  <u>제17조(제정안과 같음)</u>  <u>제18조(제정안과 같음)</u>  <u>제19조(제정안과 같음)</u>  <u>제20조(제정안과 같음)</u></p>
<p><u>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그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신설)</u></p>	<p><u>제21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u>  <u>①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u></p>
<p><u>제21조(생략)</u>  <u>제22조(생략)</u>  <u>제23조(생략)</u>  <u>제24조(생략)</u>  <u>제25조(생략)</u>  <u>제26조(생략)</u>  <u>제27조(생략)</u>  <u>제28조(생략)</u>  <u>제29조(생략)</u>  <u>제30조(생략)</u>  <u>제31조(생략)</u>  <u>제32조(생략)</u>  <u>제33조(생략)</u>  <u>제34조(생략)</u>  <u>제35조(생략)</u></p>	<p><u>제22조(제정안과 같음)</u>  <u>제23조(제정안과 같음)</u>  <u>제24조(제정안과 같음)</u>  <u>제25조(제정안과 같음)</u>  <u>제26조(제정안과 같음)</u>  <u>제27조(제정안과 같음)</u>  <u>제28조(제정안과 같음)</u>  <u>제29조(제정안과 같음)</u>  <u>제30조(제정안과 같음)</u>  <u>제31조(제정안과 같음)</u>  <u>제32조(제정안과 같음)</u>  <u>제33조(제정안과 같음)</u>  <u>제34조(제정안과 같음)</u>  <u>제35조(제정안과 같음)</u>  <u>제36조(제정안과 같음)</u></p>

제 정 안	수 정 안
<p><u>제36조</u>(생략)  <u>제37조</u>(생략)  <u>제38조</u>(생략)  <u>제39조</u>(생략)  <u>제40조</u>(생략)  <u>제41조</u>(생략)  <u>제42조</u>(생략)  <u>제43조</u>(생략)  <u>제44조</u>(생략)  <u>제45조</u>(생략)</p> <p><u>제46조</u>(공무원의 파견·겸임) ①도지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그 소속공무원을</u>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생략)</p> <p><u>제47조</u>(생략)  <u>제48조</u>(생략)  <u>제49조</u>(생략)</p>	<p><u>제37조</u>(제정안과 같음)  <u>제38조</u>(제정안과 같음)  <u>제39조</u>(제정안과 같음)  <u>제40조</u>(제정안과 같음)  <u>제41조</u>(제정안과 같음)  <u>제42조</u>(제정안과 같음)  <u>제43조</u>(제정안과 같음)  <u>제44조</u>(제정안과 같음)  <u>제45조</u>(제정안과 같음)  <u>제46조</u>(제정안과 같음)</p> <p><u>제47조</u> ①-----  -----  ----- <u>관계공무원을</u> -----  -----</p> <p>②(제정안과 같음)</p> <p><u>제48조</u>(제정안과 같음)  <u>제49조</u>(제정안과 같음)  <u>제50조</u>(제정안과 같음)</p>

#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자본금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되,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모의 방법으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출자) 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주식의 발행) ①도 이외의 자의 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공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되, 보통주와 우선주로 발행한다.



- ③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7종으로 발행한다.
- ④공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 ⑤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만주로 한다.
- ⑥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8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2. 기금에 관한 사항
13.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4. 공고에 관한 사항
1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6. 해산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2조(사장) ①사장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사장의 임명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 제56조의3 및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사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이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4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한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하되, 도의 감사부서장을 비상임감사로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5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직원의 임면) ①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상임이사(사장을 포함한다)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이사는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이사회) ①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사를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0조(이사회에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비밀누설 및 재산취득 금지 등) ①공사의 임·직원과 기술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의 임·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장 사 업

제23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 11.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2. 위 업무에 관련된 부대사업
  - 13.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 ②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 제4장 재무회계

제26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7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예산 편성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사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9조(결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결산 완료후 결산서에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비용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타 사업자의 대행사업 비용의 부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회계의 원칙 등) ①공사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사채 발행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영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사채의 발행 한도액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중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의 10배이내, 그 이외의 사업은 4배이내를 초과하지 못하며, 구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채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구사채의 액은 사채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사채 및 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보증하는 사채 및 차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미만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39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물품관리) 공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수급 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장 감 독

제41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사항
4. 제23조제1항, 제2항, 제3항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의회는 공사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대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2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제43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2회이상 공사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도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경영평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78조 및 영 제68조 규정에 의한다.

제45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이외에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제46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도지사는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사장은 도지사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도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49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충청북도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669호, 2001.9.13)는 충북개발공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설립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시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충청북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자산평가액과 기타 도의 자산중 도의회에서 의결받은 현금 및 현물 출자액으로 하며, 출자액과 관련한 채권 채무는 공사가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잔여재산 귀속) 특별회계에서 공사로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이외의 모든 잔여재산은 충청북도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제6조(계약 및 협약의 승계) 이 조례 시행전 도지사가 제3장에 규정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관과 체결한 계약 및 협약은 공사 설립일에 공사에 포괄 승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승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도지사의 공인비치) 공사는 부칙 제6조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 關係法令

## □ 地方公企業法

제49조(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2.12.8>

②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③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제52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2.12.8, 1996.12.30>(본조신설 1980.1.4)

제53조(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개정 1992.12.8>

②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2.12.8, 2002.3.25>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1980.1.4)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공사는 당해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4.12.30)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개정 1992.12.8>(본조신설 1980.1.4)

제56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2.12.8, 1999.1.29>(본조신설 1980.1.4)

제57조(등기) ①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사의 설립등기와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1980.1.4)

제58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②사장과 감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1.2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신설 1999.1.29>

④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1999.1.29, 2002.3.25>

⑤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본조신설 1980.1.4)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9.1.29, 2002.3.25>

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2.3.25>

## □ 地方自治法

제137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